

감 사 보 고 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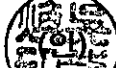
우리는 사립학교법 제19조 제4항 및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법인 송의학원(송의여자대학교)의 2012 회계연도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 및 2013년 2월 28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와 동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자금계산서, 운영계산서 및 각 부속명세서를 감사하였습니다.


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우리는 일반적인 감사 기준을 준용하였습니다.

우리의 의견으로는 학교법인 송의학원(송의여자대학교)의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은 적절하며 별첨 재무제표는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에 따라 학교법인 송의학원(송의여자대학교)의 2013년 2월 28일 현재의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자금수지 및 운영성과의 내용을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.

2013. 4. 12 .

학 교 법 인 송 의 학 원

감 사 오 용 환 

감 사 안성용 


(공인회계사 등록번호 제 5022 호)

피 감사자 소속 : 학교법인 송의학원

송 의 여 자 대 학 교

직명 : 사 무 국 장

총 무 처 장

성명 : 이 석우 

김영호 

학교법인 송의학원 이사장 귀하